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3.5.10(금) 9:30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나기성

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윤성옥 의원 외 6명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13년 4월 29일

나. 회부일자 : 2013년 5월 1일

3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에 투자하려는 국내·외 기업, 국내복귀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용어정의 및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고시된 내용에 따라 개정하고,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정부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 개정(안 제2조)
- 나. 정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부처 명칭 변경(지식경제부, 지식경제부 장관⇒산업통상자원부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) 및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규정한 별표1을 삭제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(안 제27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정부부처의 고시내용에 따른 용어의 뜻을 개정함은 물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과 수도권내 대상지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함.